

문서번호	BSKS-3-1-45
제정일자	2007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9

2007.11.01.제정 2011.12.01.개정 2016.04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부산경상대학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소재)

- ① 본 회는 부산경상대학교 노사협의회라 한다.
- ② 본 회는 부산경상대학교 내에 둔다.
- **제3조(신의성실의 의무)**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자의 의무)

-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.
-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.

제 2 장 노사협의회의 구성

제5조(노사협의회의 구성)

- ① 노사협의회(이하 '협의회'라 한다.)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-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"근로자위원"이라 한다.)은 근로자가 선출한다.
-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"사용자위원"이라 한다.)은 총장이 정한다.

제6조(의장)

-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 장으로 한다.
-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7조(간사)



문서번호	BSKS-3-1-45
제정일자	2007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9

-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.
-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.

제9조(위원의 신분)

- ① 위원은 비상임·무보수로 한다.
-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. 아울러,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(회의 1회당 최대 4시간)에 대해 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.

제 3 장 근로자위원 선출

제10조(선거관리위원회 구성)

-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관위"라 한다.)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.
- 제11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)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선거 및 일정공고
 - 2.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
 - 3.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
- 제12조(선거관리위원 선출)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제13조(선거일)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.

제14조(후보 등록)

-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(복수추천 가능)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45
제정일자	2007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9

제15조(근로자위원 선출)

-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 · 비밀 ·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-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.
-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,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

제16조(보궐선거)

-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-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·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.

제 4 장 협의회의 운영

제17조(협의회 회의)

-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.
-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.

제18조(회의소집)

-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 한다
-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, 장소,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사전 자료 제공)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·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0조(정족수)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1조(회의의 공개)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 공개할 수 있다.

제22조(비밀유지)





문서번호	BSKS-3-1-45
제정일자	2007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9

-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.
-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23조(회의록 비치)

-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· 비치한다.

가. 개최일시 및 장소

나. 출석위워

다.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

라. 기타 토의사항

-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.
- ④ 회의록은 작성일 부터 3년간 보존한다.

제 5 장 협의회의 임무

제24조(협의사항)

-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.
 - 1. 업무의 향상과 상호 협의
 - 2.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
 - 3. 근로자의 고충처리
 - 4. 근로자의 안전, 보건 기타 업무환경의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
 - 5. 인사, 노무관리의 제도개선
 - 6. 업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
 - 7. 임금의 지불방법 · 체계 · 구조 등의 제도개선
 - 8. 업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
 - 9. 근로자의 복지증진
 - 10.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
-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25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1. <삭제 2019.07.16.>
- 2. <삭제 2019.07.16.>
- 3. 학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
- 4.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
- 5.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

제26조(보고사항)

① 총장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, 설명하여 야 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45
제정일자	2007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9

- 1. 대학 운영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
- 2. 대학 인력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대학의 재정적 현황에 관한 사항
- 5.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-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총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· 설명할 수 있다.

제27조(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)

-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,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의결된 사항의 이행)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9조(임의중재)

-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.
 - 1.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
 - 2.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
 - 3.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 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6 장 고 충 처 리

제30조(고충처리위원회)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
제31조(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)

-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③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학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. 이때 학외 상담원은 법률, 병무, 건강, 인생,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





문서번호	BSKS-3-1-45
제정일자	2007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9

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32조(고충의 처리)

-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.
-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삭제 2019.07.16.>
-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.
- 제33조(상담실유영)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 유영하다.
- 제34조(대장비치)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무처 내(삭제) 고충처리 상담 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6.>

제 7 장 보 칙

- 제35조(대표위원의 권한위임)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수 있다.
- 제36조(신고의무사항)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.
- 제37조(운영세칙)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.
- 제38조(규정외의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.11.0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'학장'을 '총장'으로 한다.

부 칙





문서번호	BSKS-3-1-45
제정일자	2007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7/9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45
제정일자	2007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8/9

[별지 제3호서식]

	제 차 (정기·임시) 부산경상대학교 노사협의회 회의록
회 의 일 시	
회 의 장 소	
협 의 사 항	
보고사 항	
의 결 사 항	
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	
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 분기 의결된 시항의 이행 상황	(참석위원 서명은 뒷쪽)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

문서번호	BSKS-3-1-45
제정일자	2007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9/9

	근로자위원	서 명	사용자위원	서 명
참				
석				
위				
언				
서				
玛				